

일본, 건축물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http://www.mlit.go.jp/report/press/house04_hh_000846.html

일본 국토교통성은 파리협정에 입각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을 추진,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별로 조치 사항이 담겼는데, 국토교통성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에 위한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하였다.

오피스빌딩 관련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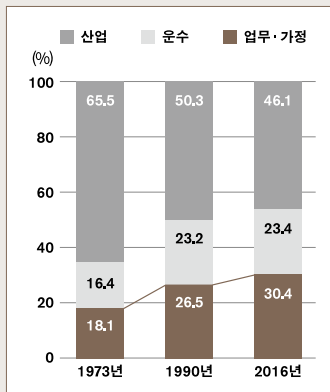
착공 전 건축계획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건축확인’ 시에 에너지절약기준을 필수로 고려해야 하는 대상으로 중·소규모 오피스빌딩(연면적 300m²)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에 대규모 오피스빌딩(연면적 2,000m² 이상)만을 확인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한 에너지절약성능향상계획을 통해 용적률 특례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여러 건축물이 제후를 한 경우도 포함시켜, 이를 촉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맨션) 관련 대책

맨션 등에 대한 계획신고제도와 감독 체제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소관 행정청의 계획 심사 과정을 합리화하고, 소관 행정청은 에너지절약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계획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단독주택 관련 대책

연면적 300m² 미만의 소규모 주택·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설계자(건축사)가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성능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에너지성능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계획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톨러너(Top Runner) 제도(에너지효율목표관리제)와 기준에 따라야 하는 주택 공급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의 권고·명령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일본 에너지 소비를 변동 추이

자료: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common/001273251.pdf>
(검색일: 2019.3.13.)